



**KR**  
KOREAN REGISTER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46762,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467  
Fax : +82-70-8799-8519  
E-mail : piping@krs.co.kr  
Date : 10 June 2020  
Person in charge : KIM Chang-su

NO. 2020-ETC-04(K)

**제목 : 현존선의 IHM(EU) 증서 발행, IHM Part I 유지/관리 및 최종검사에 대한 안내**

2013년 12월 30일 발효된 EU 선박재활용규정 (이하 "EU SRR"이라 함)에 따라 EU 국적선 및 EU를 기항/묘박하는 Non-EU 국적선은 다음과 같이 본선에 유해물질목록 Part I 및 IHM(EU)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IHM	EU SRR (EU Ship Recycling Regulation)		
	EU 국적선		EU를 기항/묘박하는 Non-EU 국적선
	신조선 <sup>1)</sup>	현존선 <sup>2)</sup>	
적용일	2018. 12. 31	2020. 12. 31	2020. 12. 31
증서	IHM(EU) 증서		IHM(EU) 적합확인서

이와 관련하여, 사례별 IHM(EU)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유해물질목록 Part I의 유지/관리 방법 및 IHM 최종검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정보를 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I. 사례별 IHM(EU) 증서 (또는 적합 확인서) 발행 절차
- II. 유해물질목록 Part I 유지/관리
- III. IHM 최종 검사
- IV. 선박재활용협약<sup>3)</sup> 비준 현황
- 부록. 1. 유해물질목록 Part I 유지/관리 양식 샘플
  - 2. MD 및 SDoC 표준 양식
  - 3. 유해물질목록 Part II 및 Part III 양식 샘플

1) 신조선이라 함은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 규정 적용일(2018년 12월 31일) 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또는
-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가 규정 적용일 6개월 이후 이루어진 선박; 또는
- 규정 적용일 30개월 이후에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

2) 현존선이라 함은 신조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재활용협약 (Ship Recycling Convention): 2009년 채택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 협약

## I. 사례별 IHM(EU) 증서 발행 절차

### 1. 본선에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유해물질목록 Part I 및 적합확인서가 없는 선박

현존선의 유해물질목록 Part I은 우리 선급에 등록된 IHM 전문공급자<sup>4)</sup>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우리 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최초검사를 통해 EU SRR에 따른 IHM(EU)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증서 발행을 위한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보 수집 및 육안/채취 검사 계획서 작성	전문공급자
2단계	선상 육안/채취 검사 수행	전문공급자
3단계	유해물질목록 Part I 작성 및 선급에 제출	전문공급자
4단계	유해물질목록 Part I 승인	한국선급 환경배관팀
5단계	최초검사 및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 발행	한국선급 현장검사원

승인된 IHM 전문공급자 목록은 우리 선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http://e-mesis.krs.co.kr/KeyService/Supplier/En/WKS\\_CorpAddress\\_List.aspx](http://e-mesis.krs.co.kr/KeyService/Supplier/En/WKS_CorpAddress_List.aspx)

### 2.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유해물질목록 Part I 및 적합확인서를 비치하고 있는 EU 국적선

2020년 12월 31일 이후 EU 국적 현존선은 EU SRR에 적합한 유해물질목록 Part I 및 IHM(EU) 증서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된 전문공급자에 의해 PFOS<sup>5)</sup> 및 가능한 한 HBCDD<sup>6)</sup>에 대한 선상 육안/채취 검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선에 신규 설치 item들에 대한 유해물질목록 Part I의 유지/관리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item들에 대한 육안/채취 검사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검토를 위해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채취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최신화 하고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최초검사를 통해 현장검사원으로부터 IHM(EU) 증서가 발급되며, 참고로 해당 증서의 만기일은 기 발행된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IHM 적합확인서의 만기일과 일치됩니다.

### 3.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유해물질목록 Part I 및 적합확인서를 비치하고 있는 Non-EU 국적선

2020년 12월 31일 이후 EU에 기항/묘박하는 모든 Non-EU 국적선은 EU SRR에 따른 IHM(EU) 적합확인서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지부에 IHM(EU) 적합확인서 발행을 신청하시면 추가 검사 없이 IHM(EU) 적합확인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4) Liberia 국적선의 경우, Liberia 기국이 직접 승인한 전문회사가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작성하여야 함.

5) PFOS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과불화옥탄술폰산

6) HBCDD (Brominated Flame Retardant):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 4. 본선에 Green Passport 증서만을 비치하고 있는 선박

Green Passport 증서는 Res.A.962(23)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으며 현재 해당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I.1항의 절차에 따라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승인 받고, 최초검사를 통해 EU SRR에 따른 IHM(EU) 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5. EU 국적으로 변경하려는 선박

Non-EU 국적선이 EU 국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록 후 6개월 이내 또는 차기 IHM 정기검사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EU SRR에 적합한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본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I.1 ~ I.4항의 경우를 고려하여 본선에 해당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II. 유해물질목록 Part I 유지/관리

#### 1. 일반사항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설비 등의 신규 설치, 선박의 수리 또는 개조 후에는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선주 또는 관리사는 이를 위한 절차 수립 및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부품이나 코팅 등이 설치 또는 적용되지 않는 한, 모든 신규 설치 item에 대한 물질신고서 (Material Declaration, 이하 "MD"라 함) 및 공급자 적합선언서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이하 "SDoC"라 함)를 제조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본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신규 설치 item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최신화 하고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U SRR이 발효됨에 따라 많은 선주들이 계약을 통해 유해물질목록 Part I의 유지/관리를 전문공급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 수행하는 선주 또는 관리사를 위해 유해물질목록 Part I 유지/관리 양식 샘플, MD 및 SDoC의 표준 양식을 부록에 첨부하였으니 필요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EU 국적선의 추가 요건

EU 국적선에 신규로 설치되는 item의 MD를 취합할 때, MD 상에 PFOS 및 HBCDD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PFOS의 함유량이 10 mg/kg (0.001% by weight) 이상인 item의 신규 설치 및 사용은 금지됩니다. 반면, HBCDD의 함유량이 100 mg/kg (0.01% by weight) 이상인 item이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최신화 하고 승인을 위해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EU를 기항하는 Non-EU 국적선의 추가 요건

EU를 기항하는 Non-EU 국적선에 신규로 설치되는 item의 MD를 취합할 때, MD 상에 HBCDD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HBCDD의 함유량이 100 mg/kg (0.01% by weight) 이상인 item이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최신화 하고 승인을 위해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Ⅲ. IHM 최종검사

### 1. EU 국적선의 선박재활용준비증서 발행 절차

EU 국적선의 선박재활용은 EU에서 승인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승인된 선박재활용시설의 목록 (EU List)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ships/>

선주가 운항중인 선박의 폐선을 결정하게 되면, 선박을 해체하기 전에 선박재활용준비증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리 선급에 IHM 최종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리 선급으로부터 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유해물질목록 통합본 (Part I, II 및 III) <sup>7)</sup> 제출	선주 또는 전문공급자
2단계	유해물질목록 통합본 (Part I, II 및 III) 승인	한국선급 환경배관팀
3단계	유해물질목록 및 선박정보를 선박 재활용 시설에 제출	선주 또는 전문공급자
4단계	선박재활용계획서 작성 및 해당 기국에 제출	선박재활용시설
5단계	선박재활용계획서 승인	선박재활용시설 당사국의 주관청
6단계	최종검사 및 선박재활용준비증서 발급 (유효기간 : 최대 3개월)	한국선급 현장검사원
7단계	유효기간 내 선박재활용	선주/선박재활용시설

선주 또는 전문공급자는 유해물질목록 Part II 및 Part III 작성 시, 선박을 재활용시설에 인도 할 때까지 운항 상 폐기물 및 재고품의 양이 변경되는 것을 예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최종검사 시 현장검사원은 유해물질목록 통합본 (Part I, II 및 III)에 등재된 유해물질의 위치 및 양이 적절하고, 승인된 선박재활용계획서를 본선에 비치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재활용시설이 EU List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합니다.

유해물질목록 Part II 및 Part III 작성 시 참고를 위한 샘플 양식을 부록3에 첨부 하였으니 필요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유해물질목록 Part I: 선박의 구조와 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목록  
 유해물질목록 Part II: 운항 중 발생한 폐기물의 목록  
 유해물질목록 Part III: 재고품 목록

## 2. Non-EU 국적선

선박재활용협약에서는 당사국 또는 대행 기관이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선박재활용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요건 및 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준비증서는 선박재활용협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강제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박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선박재활용시설 및 해당 시설 당사국의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전에 선박재활용시설에 연락을 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V. 선박재활용협약 비준 현황

선박재활용협약은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후 24개월 이후 발효됩니다.

- 1) 최소 15개 회원국 이상이 협약에 비준; 그리고
- 2) 비준 국가들의 상선 선복량의 합계가 전 세계 상선 선복량 총톤수의 40% 이상; 그리고
- 3) 각 비준국가들의 지난 10년간 연간 선박재활용 실적의 최대치의 합계가 동 국가들의 상선 선복량 총톤수의 3% 이상

현재 15개 국가가 선박재활용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총 선대 규모는 전 세계 상선 선대규모의 약 29.6%입니다.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선박 재활용의 약 98%가 이루어지는 상위 5개국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터키)의 비준이 필수적이며, 현재 인도와 터키가 비준하였으므로, 남은 3개국 중 한 국가만 비준하더라도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존선에는 MD 및 SDoC의 부재로 인해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선의 구조, 장비, 기기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링을 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따라서 신조선에 비해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가 머지않았음을 고려하여, 신조단계에서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 술 본 부 장**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관련 업체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